

#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의 가족법 담론과 젠더적 법의식

홍순애

동덕여자대학교 부교수

김연숙

경희대학교 부교수

목차

- 1 서론
- 2 법치주의 국가 구상과 법 주체 형성
- 3 법률상담을 통한 유대감의 형성과 젠더 불평등의 공론화
- 4 결론

1950년대는 신생국가 설립, 국가재건과 관련한 법제 청산과 생성을 위한 길항의 시대였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국가적 이념 구축을 위한 과도기였다. 법령을 통해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순이었고 법의 안정성은 민주주의라는 국가이념을 정초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여성 교양과 문화를 선도했던 『여원』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의 법에 대한 개념을 생성하며, 민법 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 친족상속편의 부계중심적 법률 조항과 전통 존중론의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담론화했다. 『여원』은 창간 초기부터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 민법 제정에 대한 논의들을 독자들과 공유함으로써 법의식 형성을 주도했고, 여성의 법적 주체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젠더적 법담론을 통해 여성독자들은 국가재건기 국민의 일원으로 동참할 수 있었다.

잡지는 법률상담 코너인 「법률상의」를 통해 독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혼인, 이혼, 재산상속, 호주제에 대한 법적 문제들을 논의했다. 부계중심적 가족제도 내의 여성의 소외와 차별, 젠더 불평등의 법제도가 「법률상의」를 통해 폭로되고 전시됨으로써 가족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익명으로 여성 삶의 내밀한 내용과 신변을 공개하는 행위는 여성의 사회적 발언의 시작이었고, 여성의 문제를 스스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법률 조항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시위와 공청회의 참여, 국회청원 등의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감정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0년대 『여원』의 젠더적 법담론은 국가 재건기 국민화 과정의 일부로 논의됨으로써 여성의 법적 주체의 형성과 법치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적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4.19를 예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문핵심어: 가족법, 젠더, 법치주의, 법률상담, 감정공동체, 법의식, 법 주체, 법 제도

## 1 서론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과 직면하는 순간이며 법 집행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법은 단순히 사회를 계도하거나 처벌하는 도구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 체제 변동에 따른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기능 또한 담당한다. 법이란 법전을 의미하는 것도 사회제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한 민족의 역사와 생활 전반에 걸쳐 유기적으로 발전되어온 문화적 총체이다.<sup>1</sup> 공동체가 이미 내재하고 있는 가치와 행동양식,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 혹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된 절차라는 점에서 법은 개인의 자율성과 제도적 타율성 사이에 존재한다. 법치주의는 권력행사가 법에 의해 제한되고, 그렇게 행사된 권력 내용과 결과는 정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자의적인 권력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법치는 계급과 계층, 성,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을 보장받아야만 한다. 법치주의에서 국가는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또 법은 국민만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담당자도 규율한다.<sup>3</sup> 근대국가의 기본이념은 법치주의를 근본으로 하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법치는 국가 존속의 원리가 된다.

해방 후 신생국가의 설립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법령을 통해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순이었고 법의 안정성은 민주주의라는 국가이념을 정초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법무국 내에 ‘법전편찬부’를 설치, 1946년 3월 법무국을 사법부로 개칭했고, 1947년 6월에는 행정명령 제3호를 통해 ‘법전기초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초법전의 기본사업을 시작했다. 1948년 7월 17일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법규인 헌법이 반포되고, 정부수립 직후 제1공화국은 1948년 9월에는 법전편찬위원회 직제를 공포하며 본격적인 법전편

---

1 변학수, 조홍식, 「법의식, 법감정 그리고 법제도-독일과 한국의 문화와 문학에 내재된 법의식의 문화학적 고찰」, 『독일문학』 제103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07, 192쪽.

2 엄순영, 「사법적 폭력과 법치주의」, 『민주법학』 6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51쪽.

3 김원기, 「한국인의 법의식과 준법운동의 방향」, 『법학연구』 제23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20쪽.

찬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법률 제정에 관련한 많은 문서들이 소실, 분실되었고 입법 사무는 지연되었다. 법률 제정 작업은 1952년까지 재개되지 못했고, 1953년에야 신형법이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었다.<sup>4</sup> 다른 법보다 형법이 먼저 제정된 것은 전후 혼란한 사회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과 공산주의와 관련한 국내외의 결사나 조직으로부터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법 제정이 우선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는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법 제정이 본격화된 시대였고, 대중들의 법치주의 개념과 법의식이 생성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개인의 재산과 친족, 상속에 관한 법령인 민법<sup>5</sup>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해방 후 15년이 지나 신민법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탈식민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보다는 입법과정의 논란이 그 원인이었다. 민법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한 사적인 재산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이기에 입법과정에서 전통을 존중하는 입장과 현실을 우선해서 헌법에 기초한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제기되면서 친족상속편요강에 관련한 입법 과정이 지연되었다. 특히 친족의 범위, 부부의 특유재산, 이혼 시 친권, 동성동본 금혼, 호주상속 순위 조항에 대한 이견이 대립되었으나 신민법은 순풍양속의 계승과 전통 존중의 입장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1950년대 이승만 정부는 법을 통한 국가 재건과 국가 정체성 구축을 위한 법령 제정에 매진했고, 새로운 법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법의 제정과 공포, 시행에 있어 관심을 보였던 것은 대중매체들이었는데, 특히 잡지들은 법조계 전문가들을 동원해 입법 관련 기사들을 게재하면

4 마정윤, 「해방 후 1950년대까지의 여성관련 법제화와 축첩제 폐지운동」, 『이화젠더법학』 제8권3호, 이화젠더법학연구소, 2016, 161쪽.

5 민법은 전체 5편으로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으로 구성되었다.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을 ‘가족법’이라 지칭한다. 민법의 다른 영역들이 재산에 관한 규정이라면 친족, 상속편은 혼인, 부모와 자녀, 친족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제4편 친족편은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子)의 성(性)과 본(本),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 제5장 후견, 제6장 친족회, 제7장 부양, 제8장 호주승계로 나뉘며, 제5편 상속편은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으로 구성되었다.

서 법 담론을 구성했다. 1950년대는 잡지저널리즘이 신문저널리즘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영향력과 시장 지배력을 발휘한 시대였고, 오히려 신문을 능가하는 문화적 권능을 지니고 있었다.<sup>6</sup> 1950년대 정론지로 평가되었던 『사상계』는 학술적 측면에서 「법, 국가, 질서」(1955.5), 「헌법제도의 유래」(1958.7),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권력의 구조」(1958.7) 등 법치주의의 구축과 서양의 법제, 헌정사 등에 대해 논의했고, 1959년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종합검토」(1959.1), 「2.4 파동 유감」(1959.4)을 통해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 개정에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다. 『사상계』는 이승만 정부의 미국식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문제, 법학자 켈젠의 논의를 학술적인 차원으로 전달했다. 대중잡지 『희망』은 「법창야화-내락에서 외치는 호곡(윤락녀와의 문답)」(1955.6), 「법창루포-미결인생활사(서대위 살해사건)」(1955.8)를 게재하여 법 처벌의 과정을 선정성을 가미한 실화형식으로 전달했다. 법의식이 법적 현상에 대한 인식, 감성, 평가를 총괄하는 것으로 본다면, 『희망』은 범죄를 흥미 차원으로 다루면서 법 지식의 고양보다는 법감정에 호소했다.

이 시기 여성잡지<sup>7</sup> 또한 법 제정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여성계』<sup>8</sup>는 여성잡지 중 가장 먼저 젠더적 입장에서 법 논의를 시작했다. 「왜 양가집 자제들이 범죄에 빠지는가?」(1955.4), 「6.25동란과 여성범죄」(1955.6), 「법창실화-소년절도의 비화」(1956.7), 「법창에 비친 여성과 범죄실상-해방11년의 총결산」

6 이봉범, 「1950년대 잡지 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 30호, 상허학회, 2010, 401쪽.

7 1950년대 여성잡지는 경향신문출판국에서 발행한 『부인경향』(1950.1)을 시작으로, 『직업여성』(1950.5), 희망사 『여성계』(1952.7), 현대여성사 『현대여성』(1953.10), 새가정사 『새가정』(1953.12), 가정사 『가정』(1954.12), 학원사 『여원』(1955.10), 주부생활사 『주부생활』(1956.12), 가정교육사 『가정교육』(1957.8), 『여성생활』(1959.9) 등이 발행되었다.

8 『여성계』(1952.7~1959.8)는 희망사에서 임영신이 발행한 국관 250매 내외의 국한문혼용 잡지이다. 1952년 11월 여성계로 판권이 양도되었고, 편집주간은 조경희로 “생활과 교양의 지침”을 표방하며 발행되었다. 여대생과 관련한 시의성 있는 담론을 주도했고 현모양처론, 여성의 사회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법에 관련한 기사는 1955년 3월호부터 게재되었는데, 특히 박인수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여권 차원에서 법의 문제를 다루었다. 잡지는 가족제도의 폐해와 여성 범죄의 실상을 자세하게 논의하면서 민법 개정에 관련한 법담론을 구성했다.

(1956.8), 「낙태를 법률은 어떻게 보는가-신형법을 통해본 낙태에 대한 규범」(1958.6)을 게재, “여성들도 사회적인 동향 및 동태를 파악하여 시정할 길을 찾아야 할 것”<sup>9</sup>을 당부했다. 『여성계』는 「법창실화」의 이야기 중심적 실화를 통해 법적 무지로 인한 범죄 연루와 재판의 과정을 서술, 형법의 법 적용 사례를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여원』이 민법 제정에 대한 논의들을 주도했다면, 『여성계』는 1950년대 초기 형법 제정(1953.9.18.)과 관련한 법담론을 구성, 식민지 형법과 비교되는 새로운 형법 규범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에서는 1955년 10월 창간한 여성교양잡지 『여원』의 법담론 구성과정과 민법 제정을 둘러싼 법의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여원상담실’의 일부로 게재된 「법률상의(法律相議)」의 법률관련 독자상담코너 문답들을 통해 당시 여성의 법의식과 신생국가 국민으로서의 여성주체 구성, 법치주의에 의한 국민의 정체성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여원』은 1955년 10월 창간하여 1970년 4월호까지 통권 175권을 발행하며 1950, 60년대의 여성 담론을 이끌었던 대중잡지이다. 잡지는 “여대생에서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성 여성들의 필수품”으로 인식되어, 창간 3년 만에 4만부라는 판매부수를 기록했다. 『여원』은 전후 여성의 역할이 급격히 변화되는 상황에서 여성 지식인층을 구독대상으로 “새로운 여성상”, “새로운 주부”,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현모양처” 등을 기사화, 독자와 소통하면서 여성성을 재규정하고 재생산했고, 여성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소통의 장의 역할을 수행했다.<sup>10</sup> 잡지는 신민법의 입법과정을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데, 민법의 친족편, 상속편과 관련하여 법 전문가들의 글을 게재하는 한편

9 권혁정, 「오늘의 여성-민법 개정과 여성의 지위」, 『여원』, 1957.5, 55쪽.

이 글에서는 구 일본 민법에서 법률상 여성의 위치가 낮게 되어 있어 여권을 무시한 바가 많으며, 금번 개정안의 심의에 따라 여성에게 미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자유분가와 혼인사항, 동성동본 금지혼에 대한 민법초안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한다. 여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법률상 위치를 정하는데 있어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들 자신의 위치를 종전과 같이 행위능력을 박탈당해도 무관하다는 의사표시밖에 되지 않는 것임에 신민법 제정에 관심을 표명할 것과 여성들이 법률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10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와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여원』연구-여성, 교양, 매체』, 국학자료원, 2008, 58쪽.

공청회, 여론조사를 통해 여성 대중과 소통하면서 전후 젠더적 법 담론을 구성했다. 『여원』이 1950년대 민법 제정과 관련한 젠더 불평등의 논의들을 주도하고, 1960년대에는 5.16 혁명 이후 2차 가족법 개정을 논의했다는 점, 이러한 가족법 개정에서 있어 ‘여성옹호협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단체연합’ 등의 여성계<sup>11</sup>와의 연대를 통해 여성을 법적 주체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젠더적 법담론의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법치주의 국가 구상과 법 주체 형성

1950년대 여성잡지는 전후 여성의 교양 증진과 전통적인 한국적 정서, 근대적 생활감각을 고취하는 목적에 의해 발간되었다. 이 시기 여성잡지는 어느 사회화 과정보다도 강력하게 여성성의 젠더담론 구성과 그것의 주체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sup>12</sup> 여성잡지들은 미군정의 영향으로 인한 서구적 문화와 생활방식의 지식체계를 전달하면서 도시 중심의 핵가족의 새로운 가족형태를 논의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교적 관습을 계승하는 가정주부 담론이나 현모양처 담론을 재생산하기도 했다. 당시 여성잡지 중 가장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했던 『여원』은 식모, 여공, 여차장, 윤락여성 등 주변부 계층에 대한 언설을 통해 여성의 사회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고<sup>13</sup>, 서사만화를 통해 하층민 여성의 삶이나 상층부 여성의 삶을 희화화함으로써 근대시민사회의 도덕률을 긍정하는 계몽적인 소망을 담아내기도 했다.<sup>14</sup>

11 1954년 1월 민법 정부안에 대해 여성옹호협회, 한국가정법률 상담소등 여성단체가 반대했고, 1958년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여학사협회, 대한부인회, 대한자정학회, 대한여자청년단, 여성문제연구원, 대한YWCA 등의 여성단체가 청원서를 제출했다.

안경희,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6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79-80쪽.

12 김현주, 앞의 논문, 56쪽.

13 서연주, 「주변부 여성계층에 대한 소외담론 형성 양상 연구」, 『『여원』연구-여성, 교양, 매체』, 국학자료원, 2008, 109쪽.

14 장미영, 「1950, 60년대 여성지의 서사만화 연구」, 『『여원』연구-여성, 교양, 매체』, 국학자료원, 2008, 141쪽.

『여원』은 1950, 60년대 도시 중산층 여성을 주 독자층으로 상정하여 가정의 일상을 다루며 가정주부의 표준적 모델을 제시, 여성교양과 지적 향상을 염두에 둔 편집체계를 보였다. 1955년 10월 창간사에는 “여성의 문화의식이 알고서는 국가사회의 변영 발달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지적향상을 꾀하여 새로운 시대사조를 소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서술한다. 여기에서 여성교양은 김복순<sup>15</sup>이 논의한 것처럼 일반 시민적 교양에 해당하는 시민으로서의 자각, 인간에 대한 이해,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예술적 이해, 세계의 정치, 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과학적 합리적 지식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성이라는 ‘특수’에 해당되는 각종 지식과 인격, 예절에 관한 것을 부가한 것이다. 당시 『주부생활』이 “일상생활에 치중하여 주방경제 및 육아 등을 다룰 것”을 언급하며 주부대상으로 독자를 한정했다면, 『여원』은 주부와 여대생, 직장여성 등을 포괄하면서 성에 구애되지 않는 젠더적 교양, 지식 체계 전달에 주력했다. 『여원』 창간 2주년 기념호<sup>16</sup>에서는 “여성의 자유 여권의 신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비판하며 “새 세대의 여성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했다.

『여원』은 창간 초기부터 여성범죄, 축첩, 간통, 혼인, 호적, 국제결혼 등에 대해 이태영 여성변호사, 황윤석 서울지방 법원판사, 이태준 민의원 법사위 전문위원, 김기두 서울대법대 교수 등의 법 전문가들의 글을 게재하여 신민법 제정에 대한 법담론을 구성했는데 이것은 잡지가 지향했던 여성교양과 지식체계 중 하나였다.

[표1] 『여원』 법담론 기사 목록

호수	제목	저자
1955.10	박인수사건에 있어서 남성이 더 나쁘다고 보십니까? 여성이 더 나쁘다고 보십니까?	(설문)

15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188, Wmi18YYCE, 2007.

16 「권두언」, 『여원』, 1957.10, 230-231쪽.

여기에서는 구습에 얽매인 여성을 타성의 여성이라 언급하고 오늘의 여성은 스스로 생각하고 애써 고쳐가자는 ‘창의와 의욕의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현대여성은 지성을 상실하는가 -현대여성의 정조 관념을 검토한다.	이태영
	왜 그들의 정조는 법이 보호 못했나	권순영
	성 평등에 대한 여성의 요구	챗서
1955.11	그들은 어찌하여 사슬의 몸이 되었나-여자형무소를 찾아	권정필
1955.12	박인수사건 공판에 儼然物議 -공판중지를 전후한 경위를 밝힌다.	
1956.2	당신의 꿈을 찬란히 꽃피우기 위하여 -여류법률가가 되려는 분에게	
1956.3	이혼의 윤리	이태영
	이혼에 있어서의 여성의 위치	황윤석
1956.5	민법초안에 나타난 '여성해방' 비판	엄상섭
1956.6	법률과 인간	김인기
1956.7	법창에 비친 여성비극 만태(좌담회)	이태영 외
	현대 한국여성 12인집-이태영론	강영수
1956.8	조혼에만 책임을 돌려버릴 수 있는가 -민병태교수이혼사건 검토	유희동
	민병태교수 이혼문제 비판(좌담회)	황산덕 외
1956.11	민법전 제정과 여성의 지위(상)	이태준
1956.12	민법전 제정과 여성의 지위(중)	이태준
	부모와 자식의 권리, 의무-자식은 부모의 것인가	김기두
1957.1	민법전 제정과 여성의 지위(완)	이태준
1957.5	동성동본 결혼시비	이건호
	법, 문을 겸한 한국의 퀘에테-유진오씨 편	대담
1957.9	첩에 관한 신판례 비판(좌담회)	이태영 외
1957.12	여성의 죄와 벌-법정에 섰던 6명의 여자 이야기	이경호
1958.2	남성중심의 새 민법을 규탄한다.	해바라기회
	전혀 채택되지 않은 내 수정안-입법의 민주화는 언제나 되려나	정일형

	유전학에서는 동성동본 결혼을 어떻게 보는가	강영선
	여성의 생활 각서-자신에 대한 주권의식	정비석
1958.3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잠깐만 -당사자들에 대한 법관의 개인적 충고	이병용
1958.4	나는 동성동본불혼제의 희생자	유남희
	특집) 버리고 싶은 유산: 가족제도가 가져오는 폐단	황산덕
1959.1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이의 있다	정충량
1959.2	범죄사건의 주인공과 여성-최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의 경우	이건섭
1959.4	동성동본은 혼인 할 수 없을까	박현태
1959.9	오영재씨의 고소사건과 나의 생각 -〈내외싸움은 개도 안먹는다〉	이은우
	오영재씨 고소사건과 나의 생각-〈이브는 통곡한다〉	박화성
	국제결혼에 대한 법률지식	김용한
1959.10	남편이 외도하면 아내도 바람난다	정충량
	여성만이 정조를 강요하지 말라 여성도 성에 불붙이고 꽃 필줄 안다	
	외도하는 남편은 부인을 감시 말라. 불륜과 이혼	
1959.12	사회심리에서 본 범죄현상	송건호
	간통, 축첩, 이혼	이태영
1960.1	새 민법과 여성의 권리-여권은 얼마나 신장 되었는가	장경학
	처의 법적 지위는 향상되었다	이영섭
	남녀 이십 세 약혼 자유	유민상
	어떤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가	정광현
	혼인의 성립요건	이희봉
	아내의 재산은 아내 뜻대로	이태준
	이혼에의 두 가지 길	이태영
여자도 상속 받을 수 있다.	김용한	
1960.6	대가족제도에 대한 반성	김은우

1960.9	폭정의 원흉을 재판하는 정영조씨	인터뷰
1960.10	특집 그늘진 여자의 일생-축첩과 법률상의 제재	이정희
1960.12	이혼은 필요악이다.	장경학
1960.6	황판사의 죽음이 던져준 문제점 대가족제도/직장여성 시집살이/부인이 남편보다 저명한 경우	
1961.8	특집) 왜 축첩을 하는가	박용구
	축첩이 주는 영향	이원구
1963.8	법은 과연 여성의 편인가	이태영
	돈과 법률	정법석
1963.8	정조의 법사회학	장경학
1965.2	도시의 이웃과 법률	곽윤식
1967.7	특집: 자유부인 이후-법정에선 자유부인들	이병용
1967.8	특집: 여성해방20년 결혼제도: 평등과 자유의 결혼	이태영
1968.6	당신을 위한 일상생활의 법률-아내의 명의, 그 위력	남홍우

『여원』은 창간 초기부터 법에 대한 기사들을 다수 게재하고 있고 민법의 젠더 불평등한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법률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1960년 민법 실시 후에는 변화된 법률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사들을 게재했다. 1960년대에는 법담론에 대한 기사들이 줄어들긴 했으나 대가족 제도, 축첩제와 관련한 민법 개정논의를 계속했다. 『여원』은 창간호부터 박인수 사건에 주목하면서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해 논의한다. 1950년대 대중들에게 법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정조와 관련한 충격적 법 판결을 보여준 사건은 박인수 공판이다. 이 사건은 전후 여성의 풍기문란과 아프레 분위기에 대한 비판의 예로 회자되었고, 법치주의의 원칙에서 여성을 법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의 판례였다. 박인수 사건의 첫 공판이 있던 1955년 7월 8일 법정은 6, 7천명의 방청객이 몰려와 재판이 연기될 정도였고, 이 사건에 대해 신문과 잡지 미디어에서는 황색저널리즘의 형태를 보이며 선정적으로 다루었다. 『여원』은 박인수 사건에 대해 「박인수 사건에 있어서 남성이 더 나쁘다고 보십니까? 여성이 더 나쁘다고 보십니까?」(1955.10)라는 설문과 박인수 재판을 담당한 권순영 서울지법

판사의 박인수 무죄 언도의 법적 해명인 「왜 그들의 정조는 법이 보호 못했나」(1955.10)의 글을 게재했다. 권순영은 “송, 박 두 여성의 결혼관, 정조관은 초음파전이며,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과는 거리가 멀며, 동물적인 결혼관이며, 인간의 사랑을 토대로 한 정교가 아니고, 동물적인 교미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법의 이상에 비추어 가치가 있고 보호할 사회적 이익이 있는 정조만을 법은 보호한다. 정숙한 여성의 건전한 정조만을 법은 보호한다.”는 무죄판결의 이유를 서술했다. 향락을 위해 스스로 제공한 성은 법이 보호할 수 없으며, 간섭하여서도 안 된다는 판결은 당시 대중들에게 여성의 성과 법의 관계, 여성의 정조를 어떻게 법에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를 양산했다. 『여원』에서 판결의 요지를 실은 것은 당대 대중들의 무죄판결에 대한 법 해석의 궁금증의 해소와 선정적으로만 다루어지는 사건을 법적 논리로 이해하고자 한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같은 호에 여성변호사인 이태영은 「현대여성은 지성을 상실했는가-현대여성의 정조관념을 검토한다」(1955.10)는 글을 게재, 작금의 사태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와 제도의 문제를 거론한다. 여성들이 지식이 부족하여 해방에 대비할 만한 실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탓에 확고부동한 이념이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이성에서 움직이고 명실상부한 남녀동권의 실천자가 되어야 할 것”을 언급한다. 여기에서는 자유에 대한 도취와 권리만을 찾는 유행병이 현대 지식여성의 병폐인 것을 지적하는 한편 “학교, 부형, 사회 모든 제도가 책임을 공동히 부담”하여야 하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조항에 내재된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성을 비판한다. 여성의 정조와 법의 관계를 각인시킨 혼인빙자간음죄의 무죄 판결은 법이 여성의 정조를 보호해주는 대신에 여성을 배제함으로써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킨 것이었다. 법치주의가 상실된 상태에서 법 앞에 선다는 것은 인권의 문제와 결부되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였다. 이태영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률의 모순에 대해 지적하고 여성들의 법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잡지는 박인수 사건 기사를 게재하는 한편, 대중감성의 법률적 해석을 위해 ‘모의 박인수 사건 공판’을 기획, 대중들의 관심을 촉발했다. 잡지사는 박인수 사건 마지막 공판이 있던 10월 14일 ‘모의 박인수 사건 공판’을 개최할 것을 홍보했는데 “도의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모의 공판은 김래성과 이태

영, 박순천 등의 사회 지도적 인사를 재판장, 검사, 변호인 등으로 구성, 대중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재판할 것을 계획했다. 학교 측의 방문 신청과 전화, 방문객이 잡지사 사무실을 내방하는 등 관심이 이어졌고, 개최 장소인 동화백화점 4층 영화관 또한 개점 이래 최고 방문객수를 기록할 정도였다. 그러나 모의공판은 개시 몇 시간 전 치안당국의 긴급지시로 중단되었고, 잡지사는 각 신문에 사과의 말을 광고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신문에서는 피고인을 장난감으로 취급하는 주제넘은 생각이라고 공격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 모욕이나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데도 공판을 중지시킨 치안당국의 처사를 비판했다.<sup>17</sup> 『여원』은 당시 여성 정조와 관련한 법의 해석문제에서 많은 이견이 발생한 것에 대해 모의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여론의 향방을 모색하고자 했고, 여성의 입장을 반영한 판결의 과정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비록 개최가 불발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모의공판 개최는 당시 법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하기에 충분했다.

「법창에 비친 여성비극 만태」(1956.7)의 좌담회는 민형사 재판에서 축첩, 이혼으로 여성들이 비극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논의한다. 이 좌담회는 이태영 변호사, 황윤석 지방법원판사, 이종환 편집장이 참여하여 이혼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력 상실, 친권 상실, 재산분배 청구권 미비에 대한 젠더적 불평등에 대해 논의한다.

李: 법창에 오는 수는 남편이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 여자가 고소하는 것은 불과 손가락으로 세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법은 평등한 권리를 인정했지만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통죄가 없는 것보다는 낫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오늘의 우리 한국 여성의 처지로서는 이 법률이

17 「모의 박인수 사건공판에 儀然物議-공판중지를 전후한 경위를 밝힌다」, 『여원』, 1955.12. 모의공판은 재판장 김래성(소설가), 고문재판관 이태영(여류변호사), 검사 박순천(전민회의의원), 고문검사 조재천(민회의의원, 전 검사), 부석판사 김철안(여류민회의의원), 정충량(여류사회평론가), 변호인 정비석(소설가), 고문변호인 황산덕(법대교수), 피고 오사랑(신협배우), 총지휘 장후영(변호사)이 맡기로 했다. 오사랑씨는 모의재판을 위해 피고와 증인의 증언을 베껴왔고, 법원 관계인에게 박인수 표정, 음성까지 물어보기도 했다고 서술한다.

있는 것이 크게 유효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생각해요.

李: 남계혈통주의(男系血統主義)가 아닙니까. 자식은 당연히 그 아버지의 자식이지요, 친족법상에 있어서 친권행사는 아버지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가 친권행사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친권행사를 하는 것이예요. 제도가 틀리는 것이지요. 여자가 이혼을 못하겠다는 것도 이것과 관련 되지 않아요? 만일 친족상속법에 있어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재산이 공유로 되었다가 이혼 할 때에는 분할하거나 외국과 같이 헤어질 때에는 재산분배청구권이 있어서 남녀가 살 때에 가지고 있던 그 가정의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하는 청구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요.<sup>18</sup>

좌담회에서는 혈통주의를 중심으로 한 법률의 문제를 거론하며, 젠더 불평등의 법 조항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의 현실을 지적한다. 1953년 실시된 형법에서 간통쌍벌죄가 제정되어 기존에 여성만 간통죄로 처벌되었던 것이 남녀 모두 처벌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간통죄 고소로 여성이 이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법률적 실효성은 적었다. 그 원인은 민법에서 이혼 시 어머니의 친권을 법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재산분배청구권 또한 없기 때문에 여성이 경제적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희박하여 간통쌍벌죄는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 이태영은 동등한 친권 행사의 권리와 외국과 같이 재산분배청구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정을 촉구, 가사재판소 설립과 여성들에게 여권확장운동, 여성지위 향상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좌담회는 구민법이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과 신민법이 전통 존중론에 입각하여 제정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민법전의 기초에 착수한 것은 1949년 6월이다. 수차의 심의 끝에 42개 항목의 친족편 요강과 7개 항목의 상속편 요강이 성립되었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제출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은 1956년 10월이

---

18 이태영, 황윤석, 이종환 대담, 「법창에 비친 여성비극 만태」, 『여원』, 1956.7, 178-179쪽.

다. 이 정부안은 1,118개조 및 부칙 32개조로 총 조문수 1,150개조로 구성되었다. 정부안이 전통 존중론에 입각하여 입법한 데 반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방침은 점진적 개혁론에 있었고, 1956년 11월 법사위 내 민법위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안 예비심사를 착수했다. 이에 친족편 34항과 상속편 7항만이 결정되어 「친족상속편 심의요강 심의록」을 발표, 법사위 주최로 민법안 전체에 대한 공청회를 1957년 4월 6일부터 7일 양일에 걸쳐 국회의사당에서 개최, 여론을 수렴했다. 그러나 여론수렴과는 관계없이 민법위심의소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의 전체 심의를 1957년 9월 2일 완료하고, 1957년 10월 국회본회의에 회부하여 1958년 2월 22일 공포, 196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sup>19</sup>

민법 제정에서 가장 의견대립이 격렬했던 것은 친족상속편(가족법)을 둘러싼 전통 존중론<sup>20</sup>과 점진적 개혁론<sup>21</sup>이었다. 전통 존중론의 정부안과 점진적 개혁론의 법사위의 수정안이 대립되는 상황이었고 남녀 평등론을 주장하는 여성계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부계주의의 가부장적 가족질서를 민족의 전통으로 인정하고 유교주의에 입각해 이를 고수하려는 전통 존중론과 헌법에 보장된 남녀 평등론에 의해 새로운 시대적 현실을 반영한 평등한 가족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진적 개혁론의 입장은 서로 대립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여원』에서는 젠더 불평등의 법률조항에 법사위위원들의 글을 게재하는 한편, 이에 대한 독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민법전 제정과 여성의 지위 (상), (중), (하)」(1956.8, 1956.12, 1957.1)에서 이태준은 민의원법사위 전문위원으로 민법의 법률조항의 입안 과정을 전통 존중론에 의거해 설명한다.

19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325-326쪽.

20 전통 존중론은 전통적 가족 개념하의 부계혈통주의를 고수하는 것으로 법전편찬위원회 김병로에 의해 논의되었다. 특히 그는 가족법이 고유의 전통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한국문화의 우수성에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을 당부했다. 동성동본 불혼을 주장하며 족외혼 전통을 입법하는 것을 당위로 인식하여 이것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계승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21 점진적 개혁론은 현실 존중론으로 장경근에 의해 대표되었고, 민법 제정과정의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 현행 법 중 시세의 추이로 인하여 현실과 유리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친족상속편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함을 주장했다.

우리 헌법은 혼인에 있어서는 남녀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의 부의 재산에 대한 관리사용수익권은 인정하지 않고 처의 재산에 대한 부의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은 상기의 헌법정신에 배반된다고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에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재산문제에 관하여 심히 불공평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법 소위(小委)는 엄격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처의 특유재산에 대한 부의 특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여성단체로부터의 의견은 엄격한 부부별산제를 취하되 부부의 어느 편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는 재산은 이것을 부부공유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생활의 비용은 우리 관습상 부의 부담으로 되었고 부는 호주(또는 세대주)로서 가정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불분명한 재산은 이를 부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sup>22</sup>

위 내용은 부부별산제도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夫)의 소유로 추정한다(제정 1958.2.22.),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제정 1958.2.22.)<sup>23</sup>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민법에서는 여성이 법적 행위능력이 없는 존재 즉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고, 재산을 관리할 수도 없는 존재였으나 신민법 제정 시 여성의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여성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부부별산제도 제830조 2항의 경우 부부의 불분명한 재산은 남편의 소유로 추정함으로써 논란이 되었고, 여성계에서는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었다. 이 조항은 가부장제적 전통에 입각한 조항으로 이태준은 실질적인 가정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젠더 불평등의 법조항은 상속부분에서도 나타나는데 민법 제1009조

22 이태준, 「민법전 제정과 여성의 지위(중)」, 『여원』, 1956.12, 89쪽.

23 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 2011, 410쪽.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제정 1958.2.22.) 신민법에 의하면 미혼 딸의 상속분은 아들의 절반이었고, 기혼 딸의 상속분은 아들의 4분의 1이었다. 그리고 부인의 상속분은 아들 상속분의 절반이었다. 이 조항 또한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장자계승주의의 전통 존중론을 반영한 것으로 재산상속에 있어 남녀불평등을 야기한 것으로 논란이 되었다. 친족상속법에 대한 논란은 법안이 입안되던 1952년부터 여성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1952년 봄 친족상속편 차별조항 철폐를 위한 진정서와 건의문을 여성문제연구원, YWCA 연합회 등 9개 여성단체 이름으로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1953년 3월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낼 건의문을 작성, 다각도로 개정운동을 전개하며 당시 대세였던 전통 존중론에 저항했다.<sup>24</sup> 이러한 여성단체들의 법에 대한 젠더적 관점은 여성권익을 위한 것인 동시에 법 앞에 평등한 여성 주체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에 잡지는 신민법 제정에 대한 여성독자들의 여론을 수렴, “여성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독자들이 의견을 보내줄 것을 제의했고 “이것을 여론화시켜 국회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기대하겠습니다.”(1956.12)라는 광고를 실었다. 잡지는 신민법이 남녀평등의 헌법 조항을 위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시정할 방법들을 모색했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1957년 10월 여성단체연합은 여성들의 입장을 반영한 호소문을 내고 정일형을 대표로 하는 여야 인사 33인의 친족상속편 57개 항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 1957년 11월 28일 발의했다. 이 수정안은 가족법의 모든 법률조항에 새겨진 남성의 특권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여성의 권리를 성문화한 것이었다.<sup>25</sup> 그러나 이 수정안은 국회에서 거부됨으

24 위의 책, 257쪽.

로써 여성계의 의견은 민법 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원사에서 발행하는 잡지인 『여원』<sup>25</sup>, 『현대』<sup>26</sup>는 1957년 12월 공동으로 서울 시내에서 <새민법안>에 대한 가두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것은 “편집자는 항상 독자의 생활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sup>27</sup>는 잡지 편집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의식을 쟁취해야 만 하는 필연성을 전달했다.

정일형의 수정안 제출에 대해 『여원』에서는 「전혀 채택되지 않은 내 수정안-입법의 민주화는 언제 되려는가」(1958.2)의 글을 게재하는데, 그는 “우리나라 헌법과 그 정신에 입각하여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이것을 거부한 것은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라 언급한다. 민법 입안 절차와 심의의 졸속, 무성의한 입법자들의 태도 등을 비판하며 “제3대 민의원들이 이조 오백년래 봉건제도 하에서 육성되며 실행해 오던 누습과 관습을 답습함에 그쳤고 개인 존중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신시대의 남녀평등주의 사상을 전적으로 몰각한 법을 제정한 그 죄책을 면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sup>28</sup>라고 단언한다. 정일형은 여성을 법의 주체로, 국민의 일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민주적 행태의 법률 제정에 회의를 드러낸다.

25 양현아, 앞의 책, 257쪽.

26 잡지 『현대』는 여원사에서 1957년 11월 창간되어 1958년 4월까지 발행되었다. 이 잡지의 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법이 공포된 시점에서 기사를 게재한다. 「새민법의 세 문제점을 밝힌다」(1958.1), 「새민법의 의의와 그 특징」(1958.1), 「동성동본 불혼제 시비」(1958.1),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분」(1958.1).

27 「사내소식」, 『여원』, 1958.1, 340쪽.

28 정일형, 「전혀 채택되지 않은 내 수정안-입법의 민주화는 언제 되려는가」, 『여원』, 1958.2, 219-220쪽. 정일형이 제출한 민법안 중 친족상속편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 1)친족범위의 일반적 규정의 폐지 2)서자녀의 입적과 배우자의 동의 3)혼인연령과 약혼연령 4)혼인성립선언제도규정 신설 5)부부간의 동거 장소의 협정 6)부부간의 계약취소에 관한 특별규정의 폐지 7)부부간의 소속 미분명 재산의 공유 8)협의이혼당사자의 이혼의사 확인 9)이혼배우자에 대한 재산분여 청구권 규정신설 10)인지취소금지 11)양친의 자격 12)양녀의 인정 13)사후양자규정 폐지 14)서양자 이성양자의 인정 15)복수양자의 인정 16)부모의 친권공동행사 17)부양의무자의 범위 18)호주상속 회복청구권 행사기간 신설 19)호주상속의 순위 20)호주상속권의 포기규정신설 21)호주상속인의 폐제의 규정신설 22)재산상속의 순위 23)처 및 여식의 상속분과 서자녀의 상속분 24)친족범위에 관한 경과규정 25)부대사항 등

그는 가부장 친화적 법이 갖는 위험성을 경고, 국민을 규율하는 것에 초점을 둔 법 제정 문제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시기 『여원』은 여성단체의 입장을 표명하는 글을 게재했는데 「남성중심의 새 민법을 규탄한다」(1958.2)의 글은 신민법 제정에 대한 경기여중 동창회인 ‘해바라기회’의 청원서였다. ‘해바라기회’는 ①호주제도와 법률혼주의의 폐지 ② 이혼배우자의 재산분여권 인정 ③서자 입적 시 배우자 동의 ④ 친권행사에서 부 우선권 배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 법안 심의를 다시 할 것을 요청하며 남성중심의 입법을 규탄하는 항의 데모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했다. 이 청원서가 비록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여성단체의 결집된 힘을 가시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계의 회원과는 무관하게 신민법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여원』은 구민법과 신민법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젠더 불평등의 법조항에 대해서 언급한다. 「새 민법과 여성의 권리 -여권은 얼마나 신장되었는가」(1960.1)에서는 구민법에 비해 여호주제의 인정, 재판상 이혼 확대, 처의 상속순위 명문화 등이 신설되었으나 친족 범위, 호주제의 존치, 혼인에 있어서의 부모의 동의, 동성동본혼 금지, 친권행사시 부 우선주의 등의 문제점을 열거, 신민법이 점진적인 것에 머물러 있음을 비판한다. 「어떤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가」(1960.1)는 동성동본혼 규정을 비판하며, 대신 자녀출산 후 동성불혼의 원칙이 실질상 완화,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아내의 재산은 아내 뜻대로」(1960.1)는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대해 설명하며 여전히 젠더 불평등의 요소가 남아있음을 시인한다. 「이혼에의 두 가지 길」(1960.1)에서는 법률적으로 이혼이 과거보다 쉬워진 것은 사실이나 친권이 아버지에게 제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달한다. 「여자도 상속 받을 수 있다」(1960.1)에서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여성이 상속인으로 인정된 것은 다행이나 남자와 미혼여자 간의 상속분의 차이 등은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언급한다.

『여원』이 민법에 치중하여 논의하는 것은 민법이 여성 권익보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며, 부계중심적 대가족제도 하에서 재산행위권과 친권, 이혼, 상속 등에 대한 여성 권리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의 친족상속편인 가족법의 경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이념을 훼손하는 조항들이 다수

존재, 가족법 내의 여성의 위치는 규율해야 할 대상으로 주변화 되었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서 가족법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했고, 남녀 모두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적인 가장권을 부정하고 가족의 평등한 관계가 보장되어야 했다.<sup>29</sup> 그럼에도 가족법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이념에서 벗어난 것이었고, 이것은 법치주의의 기초를 훼손하는 것이었다.

1950년대 전후 풍속을 단속하기 위한 도의담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가족주의를 공고히 하는 규율로써 법의 기능이 인용되었고, 가부장 친화적인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법인식이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국민으로서 여성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고, 법은 여성을 타율적 존재로 인식했다. 법리으로써 헌법과 민법의 충돌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원』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 전통적 폐습의 잔재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여성의 법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했다. 잡지는 젠더 불평등한 법의 담론구성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계와 여성단체연합 등의 연대를 통한 제도적 불합리를 시정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1950년대 『여원』은 여성의 권익과 관련한 대사회적 발언의 창구역할을 했던 셈이고, 이것은 1960년대 여성운동의 출발을 예견하는 것이기도 했다.

법이 국가의 토대로써 사회유지를 위한 유용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권익을 보장해야 하는 필연성을 내재한다는 점에서 법은 정의의 차원으로 논의된다. 『여원』은 여성의 법적 소외를 대변하며, 개인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측면을 논의함으로써 1950년대 법의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잡지는 법이 지배자의 통치수단이라는 개념 대신에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법에 대한 개념을 생성하며, 민법 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면서 독자들의 법의식 향상을 촉진했다. 법이 가진 초법적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법에 의한 타율적 존재에서 민법전 제정 과정에서 스스로 개인의 권익을 주장함으로써 여성은 법적 주체로 정립될 수 있었다. 『여원』의 법담론을 통해 여성독자들은 전후 국민으로서 정체성 형성이 가능했고, 국가재건기 실질적인 국민의 일원으로 동참할 수 있었다. 법은 사상이 아니라 행동하는 힘이며, 법이 존립하기 위해서

29 김은경,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07, 128쪽.

는 불법에 대한 용감한 저항을 필요로 한다<sup>30</sup>는 인식은 『여원』의 법담론을 통해 가능했고, 잡지는 법이 저항과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며 4.19를 예비하고 있었다.

### 3 법률상담을 통한 유대감의 형성과 젠더 불평등의 공론화

『여원』은 “여성계몽과 지적 향상 목적”을 표명하며 창간 1주년 기념사업으로 ‘현상문예작품 모집’, ‘성문제강습회’를 개최하는 한편, 문학, 육아, 예절, 경제 등의 교양을 전달하기 위해 『현대여성교양총서』 발간을 예고했다. 그리고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독자란을 확장하여 「여원상담실」을 개설했다. 잡지는 “억울한 하소연, 남몰래 앓고 있는 괴로운 병, 법률 앞에 흑백을 가릴 일 등이 있으시면 조금도 서슴치 마시고 여러분의 고민을 푸십시오.”라고 안내하며 독자의 신변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는 「나의 호소」, 건강과 병에 관해 상담하는 「여원병원」, 법률적 문제를 상담하는 「법률상의(法律相議)」 등의 코너를 운영했다. 그 중 「법률상의」는 “법률에 관련된 일로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적어 보내라.”고 투고요령을 안내, 분량은 이백자 원고지 3매 이내로 제한했고 익명도 허용했다. 편집부에서는 법률상담계를 설치하여 「법률상의」를 진행했고 여성법률가 이태영이 전달하여 상담했다. 이태영은 당시 황신덕이 원장으로 있던 ‘여성문제연구소’ 내에 ‘여성법률상담소’<sup>31</sup>를 운영하고 있었다.

---

30 윤철홍, 「예령의 법사상」, 『법철학연구』 제10권1호, 한국법철학회, 2007, 123쪽.

31 이태영은 전후 가정의 파탄과 축첩제 등으로 법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56년 황신덕이 원장으로 있던 여성문제연구소 내에 가정법률상담소를 개설했다. 초창기 가정법률상담소 상담건수는 년 150~400건 정도였고, 1964년 3천여 건, 1965년 5천 2백여 건, 1966년 6천 5백여 건으로 격증했다. 상담소는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동성동본혼인신고센터를 설치하거나 가두서명운동을 통해 가족법 개정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연극공연, 강연회, 법률강좌, 상담사례집 등을 펴내기도 했고 신문과 잡지에 개정운동에 대한 기사를 연재하며 가족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소현숙, 「1956년 가정법률상담소 설립과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나긴 여정」, 『역사비평』 113호, 역사비평사, 2015, 77-78쪽.

「법률상의」(1957.4~1968.12)는 1957년부터 1968년까지 12년 동안 진행되었고, 총 상담건수는 373건으로 매호 적게는 1건 많게는 6건의 상담을 진행,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두 페이지 분량으로 게재했다.<sup>32</sup> 1957년 첫 회 년 27건을 시작으로 1960년부터 상담건수가 증가하여 1962년 년 43건으로 가장 많은 상담건수를 기록했다.

[표2] 「법률상의」 상담 목록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
1월		①이혼 ②재산상속 ③혼인(동성동본)	①재산상속 ②이혼  ①재산상속 ②혼인	①사생자 입적 ②유치의 특유재산 ③이혼
2월		①이혼 ②사생자 입적 ③이혼	①혼인 ②사생자 입적	①사생자 양육비 ②사생자 입적
3월		①혼인 ②사생자 입적 ③친권(첩의 입장)	①사생자 입적 ②이혼 ③혼인	①사생자 입적 ②혼인 ③혼인(동성동본)
4월	①사생자 입적 ②이혼 ③전세금반환 ④이혼	①적출자부인소송 ②혼인	①혼인 ②재산상속	①재산소유권 이전 ②혼인예약불이행 ③이혼 ④강간
5월	①이혼 ②혼인예약불이행 ③재산상속 ④가옥매매 ⑤이혼	①이혼 ②사생자 입적 ③이혼	①이혼	①호적 정정 ②이혼
6월	①혼인예약불이행 ②재산상속	①사생자 입적	①사생자 입적 ②양자 입적 ③혼인(동성동본)	게재 안 됨

32 12년 동안 연재가 안 된 것은 4회(1960.6, 1968.6, 1968.7, 1968.10)뿐이었고, 「법률상의」는 총 141호에 걸쳐 연재되었다.

7월	①이혼 ②이혼 ③이혼 ④고아원 인가	①이혼 ②사생자 입적 ③재산상속	①재산상속 ②사생자 입적 ③혼인	①혼인(동성동본) ②혼인
8월	①혼인예약불이행 ②재산상속(첩입장)	①혼인예약불이행 ②위조 이혼	①양자 입적 ②이혼	①혼인(동성동본) ②약혼해약 ③혼인예약불이행
9월	①이혼 ②차압된 가옥문제	①혼인예약불이행 ②사생자 입적	①낙태 ②혼인(동성동본)	①혼인 ②이혼 ③사생자 입적
10월	①재산상속 ②이혼 ③이혼 ④이혼	①사생자 입적	①사생자 입적 ②강간	①이혼 ②혼인(동성동본) ③사망 손해배상
11월	①이혼 ②이혼 ③이혼	①이혼 ②재산상속	①이혼 ②이혼 ③혼인빙자간음 ④혼인	①혼인예약불이행 ②이혼
12월	①재산상속 ②혼인예약불이행 ③이혼	①낙태 ②양녀 입적 ③임신 유급휴가	계재 안 됨	①유치의 특유재산 ②혼인 ③사생자 입적 ④이혼
계	총 29건	총 28건	총 28건	총 30건

	1961년	1962년	1963년	1964년
1월	①손해배상(정조) ②혼인예약불이행	①파혼 손해배상 ②호적 입적 ③혼인 ④혼인	①이혼 ②혼인빙자간음 ③이혼 ④친정 복적	①이중 호적 ②이혼 ③손해배상
2월	①혼인 ②이혼 ③이혼	①이혼 ②이혼 ③이혼	①이혼 ②혼인(동성동본) ③혼인 ④이혼	①혼인(동성동본) ②호적 입적 ③이혼
3월	①혼인 ②혼인 ③양자 입적 ④재산상속	①혼인 ②이혼 ③재산상속	①호적 입적 ②혼인 ③이혼	①이혼 ②재산상속

4월	①친생자 입적 ②혼인 ③분가 절차	①이혼 ②재산상속 ③자녀 부양료 ④호적 입적	①이혼 ②호적 입적 ③이혼 ④이혼	①이혼 ②부동산 절도 ③이혼
5월	①혼인 ②혼인(동성동분)	①혼인 ②이혼	①재산상속 ②호적 입적 ③이혼	①분가 일가창립 ②이혼
6월	①이혼 ②이혼 ③혼인 강요	①호적 정정 ②재산상속 ③친생자 입적 ④친생자 입적	①재산상속 ②생모 입적 ③이혼 ④이혼	①혼인 ②사생자 입적 ③혼인(동성동분)
7월	①친생자 입적 ②어머니 친권 ③혼인(동성동분)	①혼인 ②호적 이전 ③이혼 ④혼인 ⑤호적 입적	①이혼 ②혼인빙자간음③ 토지등기, 연금법	①혼인 ②농지개혁법 ③사생자 균지원
8월	①혼인 ②가호적 ③협박 폭행 ④혼인	①이혼 ②이혼 ③이혼 ④손해배상	①출생신고 ②혼인빙자간음③ 부동산 취득 ④이혼	①이혼 ②혼인(동성동분)
9월	①이혼 ②이혼 ③토지개혁법 ④농촌고리채	①전세계약 ②이혼 ③인공유산 ④이혼	①이혼 ②호적 입적	①혼인 ②호적 입적
10월	①양녀 입적 ②첩의 범죄	①이혼 ②이혼 ③이혼	①혼인 ②이혼 ③귀속재산 ④혼인(동성동분) ⑤이혼	①부동산 취득 ②혼인
11월	①재산상속 ②혼인예약불이행 ③이혼 ④혼인	①혼인 ②이혼 ③손해배상 ④이혼	①이혼 ②토지 매입 ③이중 혼인 ④파혼 손해배상	①호적 입적 ②재산상속
12월	①이혼 ②이혼 ③혼인	①이혼 ②이혼 ③약속불이행	①이혼 ②혼인빙자간음	①소유권 등기 ②혼인 ③등기처분
계	총 37건	총 43건	총 42건	총 30건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1월	①이혼 ②손해배상 ③호적 입적 ④이혼	①과혼 손해배상 ②이혼	①자녀 부양료 ②호주 상속	①호적입적 ②이혼
2월	①혼인(동성동본) ②혼인(동성동본) ③혼인빙자간음	①이혼 ②재산상속 ③본처 복적	①이혼 ②이혼	①법정 이자 ②친생자 입적 ③재산상속
3월	①이혼	①사생자 입적 ②혼인 ③이혼	①호적 정정 ②출생신고 정정	①혼인 ②혼인빙자간음
4월	①호적 입적 ②친권자 설정 ③호적 정정 ④혼인(동성동본)	①혼인(동성동본) ②세입자 실종 ③장물매매	①호적 입적 ②성 변경	①혼인빙자간음 ②이혼
5월	①개명신청 ②부동산가압류 ③분가	①혼인(동성동본) ②매매계약해지 ③재산상속	①이혼 ②재산분할	①이혼 ②혼인
6월	①부정입학 사기 ②양육자 지정 ③혼인	①이혼 ②이혼 ③호적 정정	①혼인 ②이혼	계재 안 됨
7월	①실종신고 ②혼인빙자간음 ③손해배상 ④이혼 ⑤대리 임대	①이혼 ②이혼 ③재산회복	①이혼 ②재산상속	계재 안 됨
8월	①혼인(이성동본) ②혼인(이성동본) ③혼인(이성동본) ④혼인(동성동본) ⑤국가보안법 ⑥호적 입적	①혼인빙자간음 ②양자입적	①호적 입적 ②친자 확인	①재산상속 ②손해배상
9월	①이중 호적 ②이혼	①혼인(동성동본) ②이혼	①이혼	①이혼 ②이혼
10월	①이혼 ②이혼	①재산상속	①이중결혼	계재 안 됨

11월	①이혼 ②혼인(동성이본)	①자녀 부양비 ②이혼	①이혼	①친생자 입적 ②이혼
12월	① 재산상속 ② 이중호적	①재산상속 ②이혼	①이혼 ②호적퇴적	①혼인(동성동본) ②재산상속
계	총 37건	총 29건	총 21건	총 19건

상담건수를 분류하자면 총 373건 중 혼인 91건(24%), 이혼 121건(32%), 재산상속 31건(8%), 호적입적 65건(17%), 기타 65건(17%)이다. 통계로 보면 이혼에 대한 건수가 32%로 가장 많고, 혼인의 경우는 혼인예약불이행(혼인빙자간음)을 포함하면 91건(24%)으로 그 뒤를 잇는다. 호적입적의 경우는 축첩의 관습이 원인이었고, 재산상속의 경우는 상속순위와 관련한 적자, 서자, 첩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다. 기타에는 약속불이행이나 등기처분, 유처의 특유재산 등의 문의가 많다.<sup>33</sup> 문의의 대부분은 여성이었고, 본처와 첩에 상관없이 혼인, 이혼, 재산

**33** 상담건수에 대한 혼인(혼인, 혼인예약불이행, 혼인빙자간음), 이혼, 재산상속, 호적입적, 기타 등의 통계는 다음 표와 같다.

년도	혼인	이혼	재산 상속	호적입적	기타	계
1957	4	15	5	1	4	29
1958	5	8	3	8	4	28
1959	9	6	4	6	2	28
1960	11	7	0	6	6	30
1961	14	9	2	5	6	37
1962	7	19	3	7	7	43
1963	10	18	2	7	5	42
1964	8	7	2	6	7	30
1965	11	8	1	6	11	37
1966	5	10	4	4	6	29
1967	2	8	2	5	4	21
1968	5	6	3	3	2	19
총계	91	121	31	65	65	373

상속, 호적 입적에 대해 문의했다.

혼인, 이혼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것은 전쟁으로 인한 남편의 생사불명, 분단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 축첩제로 인한 처와 첩의 법적 문제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혼인의 경우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많았고, 본처가 있는 남성에게 속아서 혼인을 한 경우, 첩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여성들은 주로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가족 관계와 결부된 법의 문제를 문의했다.

문: 저는 과부로서 자녀들을 데리고 푼푼히 벌어 모아서 몇 백만 환의 큰 금액을 모았었습니다. 약 3년 전부터 어떤 남자와 교제가 되어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여 왔는데 남편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정치운동을 한다고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 후 알고 본 즉 그 남자는 본처 자식이 있는 남자로서 제가 내어주었던 돈은 모두 본처 자식의 생활비에 충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마산시내 박영숙)

답: 당신의 호소로 미루어 보아서 그 남자와 사실상 결혼을 하게 된 것은 그 남자가 독신이고 본처가 없는 줄 알고 결혼한 것이므로 혼인예약불이행(婚姻豫約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형사상으로는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그 남자에게 준 돈은 사기로 인한 증여를 이유로 취소를 하고 부당이득반환(不當利得返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sup>34</sup>

여기에서 질문자는 본처가 있는 남성에게 속아서 혼인생활을 했지만, 첩의 생활을 한 것을 인지하고 법적 해결을 문의한다. 답변자는 본처가 있는 남자에게 ‘혼인예약불이행’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돈의 증여에 대해서는

---

34 「법률상의」, 『여원』, 1959.11, 337쪽.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을 조언한다. 이 경우 여성의 혼인은 법률에 의거한 혼인이 아닌 축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남성에게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혼인예약불이행’과 ‘혼인빙자간음죄’만을 소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축첩제와 법률혼주의가 소송의 원인이 되는데, 구민법과 신민법은 모두 혼인에 있어 ‘법률혼주의’를 채택했다. 이것은 혼인신고 내지 혼인등록을 한 남녀만을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여 결혼식의 거행, 부부생활의 사실만으로 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률혼주의는 혼인관계의 존부와 혼인 성립 시기가 명확하며 국가가 요구하지 않는 부적합한 혼인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혼인 성립의 절차의 간소성, 혼인비용의 경제성 등의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법률혼주의는 신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며 소생자녀는 사생자 내지 서자로 입적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혼인신고만 완료하면 생면부지의 남녀 간에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었다.<sup>35</sup>

당시 대중들은 관습적으로 혼례식을 올리는 것을 혼인의 인정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법적 혼인신고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고, 법률혼주의에 대한 지식 또한 부족했다. 혼인, 이혼 상담의 대부분은 혼인신고에 대한 문제가 원인이었다.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여성들은 이혼 시 친권이나 위자료를 보장받지 못했고, 첩의 경우는 사실혼을 유지함에도 법적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해 자녀들이 서자나 서출자로 법에서 보호받지 못했다. 이러한 구민법의 문제점에 대해 신민법 제정 시 정일형 외 33인의 수정안에 ‘혼인성립선언제도’를 제시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혼인성립선언제도’는 혼인식을 거행하거나 혼인에 대한 선언을 한 경우 혼인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 신고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인정되는 제도이다. 정부는 빈곤한 농촌에서는 혼인식의 예가 드물고 도시생활을 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만 혼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거부했다.<sup>35</sup>

「법률상의」에서 ‘호주제’에 대한 문의는 혼인, 이혼의 문제와 결부되어 친권의 행사, 입적의 문제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항목 중의 하나였다. 호적 입적에 대

35 정광현, 앞의 책, 368쪽.

한 문의를 「법률상의」에서 65건으로 17%에 달한다.

문: 저는 6.25 당시 전남편이 행방불명된 채 소식이 없어 작년 봄에 전남편과의 소생인 열한 살 된 장녀를 데리고 현재의 남편과 재혼하였습니다. 전남편이 행방불명이 된 이후는 제가 직장을 잡아 근근이 모녀가 생활을 유지하였고 시부모들은 풍부한 생활을 하면서도 저이들에게는 냉대하였으므로 생활고를 참을 길 없었으며 장녀의 장래를 생각하고 드디어 재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재의 남편과의 장남이 출생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 먼저 시가에 호적을 떼어다 현재의 남편과 혼인신고도 하고 장남의 출생신고도 하려고 하였으나 먼저의 시가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호적을 떼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남편과의 소생인 장녀도 현재의 남편의 호적에 올리고 싶으며 남편 역시 이러한 일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현재의 시가에서 호적을 떼어올 수 있으며 또 전남편의 장녀도 현재의 남편의 호적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충주시 Y녀)

답: 당신의 시부모가 호적을 떼어 가는데 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재판상 이혼수속에 의해서 시부모의 동의 없이 호적을 떼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남편이 이미 6.25 당시부터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재판상 이혼소송원인 중 「배우자가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할때」에 해당되므로 이것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그리하여 이혼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제기자(訴訟提起者)인 당신의 재판의 등본과 재판 확정일을 기재한 이혼계를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계가 수리 되고 난 다음 지금의 남편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또한 장남이 출생신고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편의 호적에 입적된 여식을 지금의 남편의 호적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려면 전남편과 당신의 여식과의 관계는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sup>36</sup>

이 문의를 이혼, 혼인, 호적의 예를 다 포함한 것으로 이태영은 구민법의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와 서류제출 시일 등을 상세하게 답변한다. 여기에서 이혼의 경우는 「배우자가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때」의 이혼조항에 의해 이혼 수속이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고, 전남편과의 이혼 신고 후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장남의 출생신고는 혼인신고 후 현남편의 적출자로 입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남편의 호적에 입적된 딸은 현 남편의 호적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하며 현 호적제도의 모순에 대해 언급한다. 전남편 딸의 경우는 현 호적제도 하에서는 구제대상이 되지 못한다.<sup>36</sup>

‘서자가 적자가 되게 할 수 있는가?’(1957.4), ‘혼인신고를 못한 채 남편이 전사하였으나 호적에 입적 원할 때’(1958.2), ‘내연의 부부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부의 사후 적출자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가’(1958.3), ‘혼인신고 없는 남편이라고 한 후 출생한 자녀는 적출자로 될 수 있는가’(1960.9) ‘서자라는 지위를 벗어나려 합니다.’(1960.11) 등은 축첩제로 인한 적출자와 서자의 호적 문제가 주요하게 거론된다. 적출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본처 소생이며, 서자는 소위 첩의 소생을 말하는 것으로 호적의 기록에 있어 차별적으로 등재되었고, 서자의 경우는 취업, 군대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 이러한 호적에 대한 문제는 호주제가 내재하고 있는 가문의 남성에게만 승계되는 부계중심주의, 혈통중심주의가 그 원인이었다.

호주제는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이다.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민법 제778조, (호주의 정의)),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민법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sup>37</sup> 등 전후 호주제는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 이를 영속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로 존속했다. 자

36 「법률상의」, 『여원』, 1958.7, 312쪽.

37 양현아, 앞의 책, 332-333쪽.

녀가 출생하면 부(父)가에 입적하여야 하며, 다른 집으로 입양되거나 혼인 등으로 분가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서 나올 수 없었다.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지더라도 어머니는 아버지 가족의 호적부에서 나올 수 있으나 자녀는 아버지 호적부에 그대로 있으면서 어머니와 동거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여성은 혼인하면 친가의 호적부에서 나와 남편의 가에 입적해야 했다.

이에 신민법의 호주의 상속 순위에 있어서도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 2)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인 여자 3) 피상속인의 처 4)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등으로 직계비속의 남자가 호주 상속의 1순위였다. 호주제는 가의 구성에서 수반되는 가족관계의 형성을 남성중심적인 수직적 질서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인정되었다. 양현아는 호주제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화된 법이고, 정당한 차별 목적이 부재하며, 호주승계 순위의 차별, 혼인 신분관계 형성의 차별,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서의 차별 등이 존치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38</sup> 호주제는 탈식민 이후에도 일본법을 의용하면서 존속했고 전후의 사회 변화,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핵가족의 생성 등 다양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당시의 가족 현실과 괴리되어 있었다. 헌법의 조항에 의한 남녀평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호주제는 여성들에게 상징적, 심리적으로 정체성의 혼동과 상실의 경험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다. 「법률상의」에서 거론되는 논의 중 적출자 입적, 사생자 입적, 여호주 등록 등은 호주제와 관련한 법제적 문제였고, 이러한 논의는 당시 호주제로 인한 혼란과 폐해의 정도를 보여준다. 여성들은 혼인신고의 여부에 따라 자녀가 적출자가 될 수도 서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적자와 서자의 신분적 위계와 대립 속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신민법 제정 시 여성단체들과 『여원』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후 호주제는 여성을 신분적, 상징적으로 구속하는 법률이었고, 신민법에 식민지 시기 호주제가 그대로 계승되면서 여성의 법적 지위는 변화되지 않았다.

1950년대 잡지에서 지면을 통한 법률상담은 『여원』 뿐만 아니라 『희망』,

38 양현아, 위의 책, 342-346쪽.

『아리랑』, 『명랑』 등 대중잡지에서 독자와의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잡지들에서 법률상담은 주로 남성이 문의하고 있고, 대부분은 이혼문제, 재산 상속에 대한 것이었다.<sup>39</sup> 그중에서 『아리랑』은 남성들의 법률상담에 대해 구체적인 법조항을 들어 법률인식을 제고하기 보다는 윤리적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한다.<sup>40</sup> 예를 들어보면 아내의 간통에 대해 이혼 과정을 문의한 남성독자에게 답변자는 아내를 용서하고 가부장의 책임을 다할 것을 언급한다. 처녀가 아닌 아내와의 이혼과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성의 정조만 요구하는 사회와 손해배상 청구여부를 묻는 질문자의 인격을 비판, 가족 화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여성잡지인 『여성계』에서도 「법률상담」을 진행했지만 간헐적으로 게재되어 젠더 담론을 구성하거나 법 지식을 충분히 전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당시 신문과 잡지에서는 자신의 신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상담 코너가 유행했었는데, 서울중앙방송국 제1방송의 「인생역마차」는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고 사회 유명 인사들이 답변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1954년 신설되어 1958년 폐지될 때까지 48%라는 청취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인생역마차」의 대중적 호응에 힘입어 잡지 『희망』에서는 별책 “특별판” 형식으로 『인생역마차』 단행본을 1956년 8월 1집을 발간하며, 3개월 단위로 후속책을 발간했다.<sup>41</sup> 여성들의 사적문제가 공개됨으로써 고민의 내용이 독자, 청취자들 사이에 공유되었

39 대중오락잡지였던 『아리랑』의 「아리랑상담실」의 법률상담은 주로 남성 독자들이 문의했는데, 잡지에서는 법률적 사항에 관계없는 노골화된 감정과 에로틱한 장면들을 서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특성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완독잡지’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고, 법률상담에서도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홍순애, 「1950년대 대중잡지 『아리랑』의 법담론 구성과 매체전략」, 『대중서사연구』 29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3, 353-386쪽.

40 『아리랑』 「애독자 상담실」(1959.8)에서는 결혼 전 부정한 아내 이혼하려니 아내가 거부한다는 내용을 상담하는데, 이에 답변자는 인간은 실수 할 수 있고, 아내가 뉘우치고 사죄하고 있으니 이혼, 재혼하는 것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변한다. 1960년 6월호에서는 정조를 상실한 아내와의 이혼과 결혼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여성의 정조만을 요구하는 남편에 대해 인격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하며, 마음의 정조가 더 중요함을 설명한다.

41 최미진, 「1950년대 라디오 프로그램 <인생역마차>의 성격과 매체 전이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1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365쪽.



고, 이것은 여성들의 ‘삶의 지침서’로 기능했다.<sup>42</sup> 상담코너는 일상의 삶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통로였고, 질문자의 내면에 공감하며 일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했다.

『여원』의 「법률상의」는 12년 동안 연속 운영되며 법 지식을 전달하고 열악한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현실을 전달했다. 답변자는 여성의 권익을 위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독자들의 사연에 공감하며 이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 태영은 상담사연에 대해 “복잡한 가정을 이끄시기에 많은 노고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1960.4), “사정은 대단히 딱합니다만 당신의 사랑이 혼인으로 결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1960.8), “행복하여야 할 신혼생활에 것처럼 불행한 날들을 보내셔야 하는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1960.9)라고 언급하며 질문자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리고 법적 해결 방법을 전달하면서 사연자들을 격려했다. 이 코너는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연에 공감하고 위로함으로써 독자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들은 여성을 둘러싼 법 현실에 대해 인식했고, 이것은 민법 개정 담론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7년 민법 제정에 대한 정부안 제출에 대한 여성계의 반대,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의 참여, 해바라기 회의 반대 시위, 1958년 정부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6개 여성단체의 청원서 제출 등<sup>43</sup>은 여성의 합의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

42 소현숙, 「1950-60년대 ‘가정의 재건’과 일부일처법률혼의 확산-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3권, 역사문제연구소, 2015, 109쪽.

43 1954년 1월 민법에 대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한 이후 기존의 사회보수층을 대변하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등 유립단체는 미풍양속에 부합하는 법률안이라면서 찬성했지만 여성 옹호협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의 여성단체는 헌법에 반하는 남녀차별적인 법률안이라고 반대하였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는 여성계의 입장을 다소 반영한 친족편 34항목, 상속편 7항목으로 구성된 심의요강(법사위요강)을 마련했다. 법사위는 각 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으나(1957년 4월 6일-7일)으나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친족상속편의 정부 측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1958년 2월 6개 여성단체(대한여학사협회, 대한부인회, 대한가정학회, 대한여자청년단, 여성문제연구원, 대한YWCA연합회)가 모여서 자녀입적조항과 이혼배우자에 대한 재산분여청구권 조항만이라도 고쳐보려는 의도에서 이승만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성과는 없었다.

노력이었고, 이것은 법담론을 통한 여성의 감정공동체 형성과도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법률상의」는 법에 대한 문제를 통해 독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잡지사의 의도를 반영한 코너였다. 이것은 젠더 불평등의 문제가 법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가시화되어 나타나면서 어떻게 피해자를 양산하는지 보여준다. 일상에서 불합리하게 존재하는 법제도가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폭로되고 전시됨으로써 가족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익명으로 전달된 여성 삶의 내밀한 내용과 신변을 공개하는 행위는 여성의 사회적 발언의 시작이었고, 여성의 문제를 스스로 공론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부계중심적 가족제도 내의 여성의 열악한 현실과 지위가 공개됨으로써 여성의 문제는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쟁점화 될 수 있었다. 이것은 젠더 불평등으로 인한 여성의 법적 소외와 이로 인한 피해자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성의 대 사회적 목소리를 통한 사회참여의 필연성과 여성을 국민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결론

1950년대는 신생국가 설립, 국가재건과 관련한 법제 청산과 생성을 위한 길항의 시대였고 법치주의를 근거한 국가 이념 구축을 위한 과도기였다. 이 시기 여성 교양과 문화를 선도했던 여성잡지들은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부계중심적 법률 조항에 대한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담론화하면서 여론을 수렴, 법률 입안과정에 참여했다. 『여원』은 창간 초기부터 여성계의 입장을 대변, 민법 제정에 대한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면서 여성의 법의식 형성을 주도했고, 여성의 법적 주체로서의 성장을 견인했다. 잡지는 법적 소외로 인한 여성 범죄 양상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고, 여성단체들과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국회에 민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독자들을 위

---

안경희,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6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4, 78-79쪽.

한 법률상담인 「법률상의」를 통해 독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혼인, 이혼, 재산상속, 호주제에 대한 법적 문제들을 공유함으로써 법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여원』이 민법 제정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을 환기하며 법치주의에 기반한 법의식을 고취했지만 헌법 개정이나 국가보안법 개정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전후 계엄법과 국가보안법은 법의 권위를 강화되면서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지대의 역할을 수행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여원』에서는 정충량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이의 있다」(1959.1)를 게재하였는데,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는 『사상계』, 『신태양』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여원』에서는 이 글이 유일하다. 정충량은 국가보안법이 이현령 비현령의 측면이 적지 않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법으로 언론단속 조항 제17조 5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으로 해서 세상이 들끓어도 여성들은 태연하였다. 정치는 남성만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서 오는 착오였는지 모르나 하등의 사회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일은 여성의 정치적 관념이 훨씬 남성에게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다.”라고 언급, “위로 내려오는 정치보다는 밑으로부터 부르는 민주주의를 건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충량은 여성들이 정치적 관념이 없는 것과 국가보안법에 무관심한 태도를 비판하며,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중요함을 역설한다. 민법이 여성의 법적 권위와 관련한 것이기에 『여원』에서는 이에 관심을 집중했지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던 셈이다. 이것은 여성을 주부, 직장여성으로 한정하는 여성잡지가 갖는 한계이기도 하고, 반공 정국에 대한 정치적 참여의 여력과 동력이 없는 당대 여성계의 상황 때문이기도 했다.

1960년 신민법이 실시되고 나서 『여원』의 법에 대한 기사는 1950년대보다는 적게 게재된다. 김병익의 지적대로 『여원』은 1960년대 들어 사회적 이슈들 대신 일상의 신변잡기적인 내용을 주로 게재하면서 광고 지면을 추가로 배분하는 상업, 생활잡지로 변모해 간다. 여성의 교양과 지식에 대한 편집방침은 지속되지 않았고 기사는 연예와 영화 등 흥미 위주의 소식들로 채워졌다. 그럼에도 『여원』은 가족법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며 「대가족제도에 대한 반성」(1960.6), 「종합기사-그늘진 여자의 일생, 첩」(1960.10), 「특집, 왜 축첩을 하는가」(1961.8)

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가족제도의 병폐와 여전히 축첩을 하는 남성들의 태도를 비난, 축첩자를 동용하지 않는 법규를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법은 과연 여성의 편인가-법률상담소를 통해 본 이혼의 실태」(1963.3)에서 이태영은 여성법률상담소의 여성상담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여전히 사실혼으로 인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와 이혼 시 재산분배 및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법의 미비, 자녀양육의 권리가 부(父)에게만 주어진 것에 대한 법률 개정을 논의했다.

이런 『여원』의 편집체계는 법 제정을 둘러싼 여성단체들의 행보와 연동하고 있다. 신민법 제정 후에도 여성단체들은 계속해서 젠더 불평등의 법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1960년 실시된 신민법 중 이혼 시 모의 친권을 부와 동등하게 부여할 것, 재산의 균등 상속, 이혼 시 재산분여청구권 등 불평등한 조항에 대해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가정법원 설치만을 허가 받았다. 이후에도 이태영과 여성단체들은 가족법 개정을 촉구, 1962년 가족법 개정에서 차남 이하의 혼인에 따른 법정분가 및 호주의 강제 분가 제도만 채택되었고, 여성단체가 주장한 여성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은 사장되었다. 이에 신민법은 1977년 가족법 개정 때까지 유지되었다. 5.16 이후 박정희의 군사정부는 아프레적인 분위기를 일소하기 위해 ‘여성은 가정으로’라는 구호를 전면화하면서 현모양처 담론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법 개정 논의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는 민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성의 법의식이 새롭게 생성되는 시기였음에 틀림없다. 『여원』은 전후 새롭게 부여된 여성의 역할에 맞는 지식과 교양을 전달하기 위해 여대생, 직장여성, 주부를 독자로 설정, 당대의 시의적 내용들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고, 그 중의 하나가 법 담론이었다. 『여원』은 민법의 친족상속편인 가족법에 관심을 집중하여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여성의 법적 권리문제를 담론화했다. 박인수 사건으로 촉발된 법에 대한 관심은 신민법 제정으로 이어졌고, 사회 질서를 규율하는 법령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대적 법에 대한 인식은 『여원』의 법 담론을 통해 가능했다. 그리고 잡지는 여성의 법적 주체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기여했다. 『여원』은 1950년대 법 담론의 구성을 통해 여권의식과 남녀평등의 젠더적 법의식을 형성했고, 잡지는 여성이 국민국가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역할 했다. 비록 1960년대에는 여타

여성지와 비슷한 상업잡지로 변모하지만 1950년대 신생국가 설립과 재건에 있어 법치주의 법담론에 대한 여성계의 논의를 주도했다는 점과 법을 통한 여성운동의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1950년대 젠더적 법담론은 국가재건기 국민화 과정의 일부로 논의됨으로써 법치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적 국가 정체성은 확립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여원』, 『여성계』, 『희망』, 『아리랑』, 『신태양』, 『사상계』

### 단행본

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 2011, 332-333쪽.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368쪽.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 연구모임, 『『여원』연구-여성, 교양, 매체』, 국학자료원, 2008, 58쪽.

### 논문

김원기, 「한국인의 법의식과 준법운동의 방향」, 『법학연구』 제23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19-33쪽.

김은경,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07, 128쪽.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8, 한국여성 문학회, 2007, 7-60쪽.

마정윤, 「해방 후 1950년대까지의 여성관련 법제화와 축첩제 폐지운동」, 『이화 젠더법학』 제8권 3호, 이화젠더법학연구소, 2016, 155-186쪽.

변학수, 조홍식, 「법의식, 법감정 그리고 법제도-독일과 한국의 문화와 문학에 내재된 법의식의 문화학적 고찰」, 『독일문학』 103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07, 103-173쪽.

소현숙, 「1956년 가정법률상담소 설립과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나긴 여정」, 『역사비평』 113호, 역사비평사, 2015, 72-94쪽.

\_\_\_\_\_, 「1950-60년대 ‘가정의 재건’과 일부일처법률혼의 확산-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3권, 역사문제연구소, 2015, 97-135쪽.

안경희,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6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4, 73-128쪽.

엄순영, 「사법적 폭력과 법치주의」, 『민주법학』 6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49-79쪽.

이봉범, 「잡지 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 30호, 상허학회, 2010, 397-454쪽.

윤철홍, 「예링의 법사상」, 『법철학연구』 제10권1호, 한국법철학회, 2007, 107-148쪽.

최미진, 「1950년대 라디오 프로그램 <인생역마차>의 성격과 매체 전이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363-388쪽.

홍순애, 「1950년대 대중잡지 『아리랑』의 법담론 구성과 매체전략」, 『대중서사연구』 29권3호, 대중서사학회, 2023, 353-386쪽.

## Abstract

Family Law Discourse and Gendered Legal Consciousness in Women's Magazine 『Yeo-won』 in the 1950s

Hong sun-ae · Kim Yeon-Sook

The 1950s was an era of antagonism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state and the liquidation and creat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national reconstruction, and it was a transitional period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deology based on the rule of law. Yeon-won, who led women's culture and culture, created the concept of law as an institution for the protection of her rights, gathered public opinion on the enactment

of civil law, and discussed the issue of gender inequality in the paternal-centered legal provisions for the inheritance of relatives. Yeowon led the formation of legal consciousness by representing the position of the women's community and sharing discussions on the enactment of civil law with readers from the beginning of its foundation, and led to the growth of women as legal subjects. Through this legal discourse, female readers were able to form an identity as a post-war citizen and participate as a member of the actual national reconstruction period.

In particular, the magazine discussed legal issues about marriage, divorce, property inheritance, and the Australian system that women experience in their daily lives while expanding communication with readers through the legal consultation section "Legal Affairs".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family law were able to gain sympathy as the legal system of women's alienation and discrimination, and gender inequality within the paternal-centered family system was exposed and exhibited through "Legal Affairs". The act of anonymously disclosing intimate contents and personal information of women's lives was the beginning of women's social remarks, and it became an opportunity to form an emotional community by publicizing women's issues. In the 1950s, "Yeowon" discussed gender legal discourse as part of the national reconstruction process, establishing a democratic national identity based on women's legal subject and the rule of law.

Key words: Family Law, Gender, legal counsel, emotional community, Legal Consciousness, Legal Subject, Legal System

논문투고 / 2024.07.08.

논문접수 / 2024.07.22.

게재확정 / 2024.08.05.